

[일련번호 : 34]

# 양 천 구

## 주 의 요 구

**제 목** 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및 과목경정 절차 미이행

**관 련 기 관** 서울특별시 양천구 △△과

**내 용**

### 1. 업무개요

△△과는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연도별 세출예산을 편성·집행하고 있다.

### 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지방재정법」 제47조(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)에서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13조(세출예산 집행기준)에서는 세출예산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- 사무관리비 : 일반수용비(물품구매, 인쇄비, 소규모 수선비, 무인경비, 전기안전관리대행, 방역 수수료,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등 소규모 용역에 대한 역무대가) 임차료(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), 급량비, 피복비, 위원회 참석수당, 심사수당 등
- 공공운영비 : 공공요금 및 제세, 연료비, 시설장비유지비(건물, 기구 등의 유지관리비), 차량·선박비 (각 기관에서 보유하는 업무용 차량 등의 유지비, 유류비)

또한, 「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」에 따르면 동일단위 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(통계목)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경우

사업담당자는 변경 내역서를 작성, 실·국장이 결정하여 변경사용 할 수 있고, 이때 변경 내역을 예산부서 및 회계부서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. 아울러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동일회계 내에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99조(과목경정 등)에 따라 각 실·과장은 출납폐쇄일 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△△과는 지게차 등 임차료, 물품 구매비 및 위원회 심사 수당 등은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예산변경 또는 과목경정 절차 없이 공공운영비로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.

### 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△△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### 5. 조치할 사항

△△과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,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집행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